

부산시민공원(송상현광장)

시설물 사용허가(대관) 지침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부산시민공원(송상현광장) 시설물 사용허가(대관) 지침

제정 2014. 4. 7.

개정 2020. 5.20.

개정 2023. 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시민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 및 송상현광장(이하 “광장” 이라 한다.) 내 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립하고, 공원과 사용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0.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사용허가라 함은 전시, 연습, 행사 등과 이와 직접적인 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원(광장) 내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사용허가 절차를 통해 공원(광장)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사용허가 기준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제1조에 따른 사용허가시설은 공원 17개소, 광장 3개소이며, 사용요금(부가세별도)은 다음과 같다.<2023.3.15.개정>

① 공원 사용허가 시설(부가세 미포함)

구 분		면적 (㎡)	단가 (시간/원)	대관요금 (원)	대관기준	
갤러리	문화 예술촌	갤러리1	122.8	130	15,960	■ 토·일·공휴일은 1일 사용료의 20%가산 ■ 1일 전시시간(09:00~22:00)
		갤러리2	120.7	130	15,690	
	시민 사랑채	미로전시실	409.5	130	53,230	
		백산홀	710.7	130	92,390	
	다솜관	다솜갤러리	216.4	130	28,130	
세미 나실	다솜관	동백꽃방	149.2	3/270	40,280	■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사용료의 20%가산 ■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고등어방	67.2	3/270	18,140	
	시민 사랑채	장영실방	77.6	3/270	20,950	
		안용복방	142.8	3/270	38,550	
		박재혁방	51.9	3/270	14,010	
		박차정방	86.7	3/270	23,400	
연습실	문화 예술촌	연습실1	120.7	150	18,100	■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1일 사용료의 20%가산 ■ 1일 사용시간(09:00~18:00)
		연습실2	120.7	150	18,100	
공연장	흔적극장		320	150	48,000	■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1일 사용료의 20%가산 ■ 1일 사용시간(09:00~18:00)
	방문자센터야외공연장		390	150	58,500	
	백산홀		710.7	150	106,600	
잔디광장	하야리아잔디광장		45,000	2/20	900,000	■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사용료의 20%가산 ■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다솜관		7,000	2/20	140,000	

잔디광장/국립아트센터 행 삭제 <2023.3.15.개정>

② 광장 사용허가 시설(부가세 미포함)

구 분		면적 (㎡)	단가 (시간/원)	대관요금 (원)	대관기준
마 당	문화마당 (선큰광장, 잔디스탠드)	10,070	1/10	100,700	■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사용료의 20%가산 ■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다이나믹 부산마당 (잔디광장, 포창광장)	15,750	1/10	157,500	
	역사마당 (포창광장)	8,920 (6,160)	1/10	89,200	

제4조(사용허가의 구분)

- ① 사용허가는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사용허가, 수시사용허가로 구분한다.
- ② 정기사용허가는 상·하반기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공원(광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한다.
- ③ 수시사용허가는 정기사용허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로 신청을 받아 허가하며,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별지 제1~3호 서식)를 사용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대관) 절차

제5조(사용허가 신청)

-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한다.)는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시설과 기간을 지정하여 직접 예약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필요시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홈페이지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이나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2020.05.20.개정>

- ② 사용허가신청 시 사용허가기간은 준비·진행·철수기간을 포함하며, 깎여리는 최소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승인)

- ① 공원(광장)은 사용허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 이를 심의하고,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공원(광장)은 사용허가를 승인함에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공원(광장)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포기로 간주하며, 사용허가 승인을 취소한다.

제7조(사용허가 승인 기준)

① 사용허가 승인 기준은 공원(광장)이 시설물 운영 방침과 사용허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허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관의 공익 또는 공공성 목적의 사용허가
2. 순수 예술인 및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용허가
3. 공원(광장)의 전시허가기준은 기획전시, 공동기획전시, 단체전, 개인전 순으로 한다. 단, 개인전이 단체전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효과에서 우세 할 경우에는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다.

③ 수시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위의 각호에 준하여 사용허가를 한다.

④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승인 및 운영기준은 별지4호와 같다.

제3장 행사 및 대관 등 진행

제8조(진행의 정의)

진행이라 함은 준비기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 사용허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9조(진행 시 유의사항)

- ① 사용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허가일 이전에 공원(광장)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물론 설치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공원(광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원(광장)은 공원(광장)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를 개최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원(광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안내원의 복장은 이용객과 구분된 통일되고 단정한 복장이어야 하며, 안내원 교육은 공원(광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일자별로 공원(광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사용자는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반드시 공원(광장)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홍보용 현수막은 공원(광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배너 설치는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허가시설 주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 ① 사용자는 공원(광장)에서 행해지는 전시, 행사 등을 녹화 또는 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공원(광장)이용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광장)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기타 판촉 행사 등)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사용자가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원(광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 장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전시작품, 행사 응용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원(광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사용허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제12조 (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 제한, 취소, 신청자격 중지)

- ① 공원(광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원(광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공원(광장)의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경우
 3. 바자회 등의 상품홍보, 판매행사, 음식물조리, 화기사용 등을 수반하는 경우
 4. 시민공원 내 정치적 행사<2023.3.15.개정>
 5. 시민공원 내 종교행사 및 특정단체 행사 등의 경우(단, 부산광역시 요청이 있을 시 승인할 수 있다.) <2023.3.15.개정>
 6. 제3항에 의해 신청 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7. 체육행사 등 시설물(잔디포함) 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 ※ 하이리아잔디광장은 토·일·공휴일 다수의 공원(광장)이용객을 위해 가급적 장소사용 불허
 8.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원(광장)은 사용허가승인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승인 후 사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사용허가승인 후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3. 공원(광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허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공원(광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하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사용허가취소를 원하는 정기신청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단, 사용허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사용허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

제5장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허가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공원(광장)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반환시점	반환 사용료
① 시의 행사 또는 공원(광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개시일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일 후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4조(사용료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종교적 의식과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도시공원(광장) 또는 녹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
- ② 시장은 그 밖의 사유로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원(광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변경금지 및 사용승인 해지

제15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허가승인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는 공원(광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일정 및 내용 변경금지)

- ① 사용자는 전시 및 행사내용 등을 공원(광장)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 ② 사용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일 전 공원(광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원(광장)은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일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공원(광장)이 별도로 인정하여 사용일 전에 공원(광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공원(광장)사정에 의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현수막·부스 등을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공원(광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공원(광장)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 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공원(광장)은 사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공원(광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전시장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⑤ 공원(광장)내 모든 사용허가시설(물)에는 전시개막식 및 각종행사 등에 따른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제7장 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

제18조(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① 공원(광장)은 사용허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지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공원(광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건축물 또는 작품설치와 관련된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물품만 설치가 가능하다.
2. 휘발유, 신나, LPG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광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원(광장)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공원(광장)은 사용허가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공원(광장)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공원(광장)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원(광장)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자가 반입한 작품 및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

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공원(광장)은 진행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장일에는 외부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법과 시스템 경비만을 제공한다.

- ④ 사용자는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사용허가기간 내에 철수하고 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⑤ 사용허가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는 실비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제20조(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원(광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지침 위반 시의 책임)

이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시설물 사용허가(대관) 신청서

사 용 자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팩스번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전시(행사)명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요일 : ~ 20 년 월 일 ()요일 :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예술촌갤러리① <input type="checkbox"/> 예술촌갤러리② <input type="checkbox"/> 다솜갤러리 <input type="checkbox"/> 백산홀 <input type="checkbox"/> 미로전시실	
		연습실	<input type="checkbox"/> 예술촌연습실① <input type="checkbox"/> 예술촌연습실②	
		세미나실	<input type="checkbox"/> 동백꽃방 <input type="checkbox"/> 고등어방 <input type="checkbox"/> 안용복방 <input type="checkbox"/> 박재혁방 <input type="checkbox"/> 박차정방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흔적극장 <input type="checkbox"/> 백산홀 <input type="checkbox"/> 방문자센터야외공연장	
		광 장	시민 공원	<input type="checkbox"/> 하야리아잔디광장 <input type="checkbox"/> 아트센터부지광장 <input type="checkbox"/> 다솜광장
송상현 광 장	<input type="checkbox"/> 문화마당 <input type="checkbox"/> 다이나믹부산광장 <input type="checkbox"/> 역사마당			
사 용 기 간	준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간)		
	전시 및 행사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간)		
	철수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간)		
입장료				
관람범위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부산시민공원장 귀하				
붙임 : 전시(행사)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관련

전시계획서

1. 사용자

기관명(단체명)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실무자 연락처	성명	Fax 번호	
	전화	e-mail 주소	
	핸드폰	홈페이지 주소	

2. 전시 세부 계획

전시회명			
전시목적	※ 가능한 상세히 기재 (사용허가 심사시 참고사항)		
전시내용	시(점), 서(점), 동양화(점), 서양화(점), 졸업작품전(점) 기타미술작품(점)		
전시실 사용기간	전시기간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작품반입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작품반출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전시 단체	주 최		주 관
	후 원		

※ 잘못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주 소 :

신청인: ㉠ 또는 서명

부산시민공원장 귀하

행사(공연) 계획서

1. 사용자

기관명(단체명)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실무자 연락처	성명	Fax 번호	
	전화	e-mail 주소	
	핸드폰	홈페이지 주소	

2. 행사(공연) 세부 계획

행사명				참석인원	명
행사성격	행사 / 공연(합창, 합주, 독창, 독주,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기타공연)				
행사 (공연) 일시	1. 준비작업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2. 연습(리허설)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3. 본 일정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4. 정리(철수)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행사(공연) 장소					
개최 목적	※ 가능한 상세히 기재 (사용허가 심사시 참고사항)				
프로그램 내용 (첨부로 대체가능)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 ~ :				
	: ~ :				
	: ~ :				
	: ~ :				
기타사항					

※ 행사(공연)계획 및 내용을 잘못 작성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사용자(단체) 대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주 소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시민공원장 귀하

연습(세미나) 계획서

1. 사용자

기관명(단체명)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실무자 연락처	성명	Fax 번호	
	전화	e-mail 주소	
	핸드폰	홈페이지 주소	

2. 연습(세미나) 세부 계획

행사명				참석인원	명
행사성격	연습(합창, 합주, 독창, 독주,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기타공연) 교육, 세미나, 기타				
행사 일시	1. 준비작업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2. 연습(리허설)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3. 본 일정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4. 정리(철수)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행사 장소					
행사 목적	※ 가능한 상세히 기재 (사용허가 심사시 참고사항)				
프로그램 내용 (첨부로 대체가능)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 ~ :				
	: ~ :				
	: ~ :				
	: ~ :				
기타사항					

※ 연습(세미나)계획 및 내용을 잘못 작성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사용자(단체) 대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주 소 :

신 청 인 : ㉠ 또는 서명

부산시민공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관련 <2020.05.20.개정>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부산시민공원은 시설물 대관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부산시민공원 시설물 대관신청 및 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2.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선택정보 : 이메일, 팩스, 통장사본(필요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및 파기

-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5년간 관리

4.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에는 대관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행사 진행 등의 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 정보는 미작성시 등록 불가)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부산시민공원 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신청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	-----	------

부산시민공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제7조 제4항 관련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승인 및 운영기준

제1조(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민들의 정서함양, 가족화목, 체험학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내에 조성하는 시민꽃밭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꽃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사용자 선정방법) ①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꽃밭 사용을 신청한 인원이 허가대상 구역 수 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신청자격)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제4조(사용면적)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개인의 경우 1인당 9㎡(1개 구역), 단체는 1단체당 90㎡(10개 구역)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기간)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4년도는 부산광역시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의 사용료는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부산시설공단)가 정한다.

제7조(의무) ①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는 본 규정의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는 부산광역시(부산시설공단)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는 초화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연중 성실하게 수행하여, 꽃이 시들어 죽거나 잡초가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식물 제한)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초화를 심고 가꾸는 작업만 가능하며, 농작물은 심을 수 없다. 특히 넝쿨식물, 키 큰 식물 등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식물은 재배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다. 면적을 임의 조정하여 확대하는 행위(접근통로 및 타인 공간 침범)

라. 초화재배에 비닐피복, 농약 등을 사용하는 행위

마. 지정된 구역 이외에 출입하는 등 타인에게 반감을 주는 행위

바. 폐기물, 오물, 타목적용 위한 자재 등 초화재배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입하거나 흙을 반출하는 행위 등

②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는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하며, 작업도구(모종삽, 호미 등)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제10조(사용권리 취소·회수) ① 시민꽃밭 사용자(단체)가 본 규정의 제7조(의무), 제8조(재배식물 제한),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를 지키지 않거나 기타 시민꽃밭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부산시설공단)는 즉시 사용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부산시설공단)는 시민꽃밭 사용자(단체)의 권리를 취소·회수할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당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부산시설공단)는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시민꽃밭 사용자(단체)의 권리를 취소·회수하였을 경우, 차순위 대기자 등에게 해당 구역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시민꽃밭 사용자(단체)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부산시설공단)는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